

사천시 주택사업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2005-8
----------	--------

제 출 일 자	2005. 3. 3
제 출 자	사 천 시 장

1. 의결주문

사천시 주택사업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주택건설촉진법」이 폐지되고 「주택법」이 제정·시행됨에 따라 변경된 법령의 내용을 조례에 반영하는 한편, 현행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기 위하여 조례 전부를 개정하려는 것임.

3. 주요내용

가. 농어촌주택사업 관련 조항 삭제

나. 인용 법령명칭 및 용어 정비

○ 주택건설촉진법 ⇒ 주택법

○ 한국주택은행 ⇒ 국민은행

다. 현행 국민주택 용자제도가 은행에서 직접 시행하고 있고, 우리시가 시행하는 국민주택 사업이 없어 이와 관련된 조항 정비

4. 주요 토의과제 : 없음

5.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따로붙임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없음

다. 기 타

1) 입법예고(2004. 12. 14 ~ 2005. 1. 7) 결과 제출된 의견 없음

사천시 주택사업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사천시 주택사업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사천시 주택사업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주택법」(이하 “법”이라 한다)에 의한 국민주택사업(이하 “사업”이라 한다)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법 제73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천시주택사업특별회계(이하 “회계”라 한다)를 설치하고 이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국민주택사업”이라 함은 법 제60조 규정에 의한 국민주택기금으로부터 자금을 지원받아 건설되거나 개량되는 주택을 말한다.

제3조 (국민주택금고 설치) 회계를 운영하기 위한 금고는 국민은행 또는 시금고(이하 “은행”이라 한다)의 본·지점에 설치한다.

제4조 (세입) 사업의 세입은 타회계전입금, 용자상환금, 이자 및 기타수입으로 한다.

제5조 (세출) 사업의 세출은 차입금원금 및 이자의 상환과 기타 필요한 경비로 한다.

제6조 (자금운영) 용자금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채권관리관을 지정운영하고 용자금의 상환 및 채권상태를 명확히 하기 위해 채권관리대장을 비치하여야 한다.

제7조 (입주자로부터 할부금 상환) 입주자로부터의 할부금 상환은 용자조건에 따라 분기별 또는 월별로 상환한다.

제8조 (용자금의 일시상환) ①입주자는 용자금을 상환기간 만료전에 일시불로 상환할 수 있다.

②제1항의 상환액은 즉시 은행에 상환하여야 하며 다른 자금으로 사용할 수 없다. 다만, 자체자금에 의한 용자일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9조 (준용) ①이 조례에 규정되어 있지 않은 사항은 일반회계의 예에 준한다.

②용자를 받은 사람이 상환금을 체납하였을 때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의해 강제 징수할 수 있다.

제10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관 계 법 령 발 취

주 택 법

제2조 (용어의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주택"이라 함은 세대의 세대원이 장기간 독립된 주거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구조로 된 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 및 그 부속토지를 말하며, 이를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으로 구분한다.
2. "공동주택"이라 함은 건축물의 벽·복도·계단 그 밖의 설비 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공동으로 사용하는 각 세대가 하나의 건축물안에서 각각 독립된 주거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구조로 된 주택을 말하며, 그 종류와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 "국민주택"이라 함은 제60조의 규정에 의한 국민주택기금으로부터 자금을 지원받아 건설되거나 개량되는 주택을 말하며, 그 국민주택의 규모(이하 "국민주택규모"라 한다)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60조 (국민주택기금의 설치 등) ①정부는 주택종합계획을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필요한 자금을 확보하고, 이를 원활히 공급하기 위하여 국민주택기금을 설치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국민주택기금은 다음 각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정부의 출연금 또는 예탁금
2. 공공자금관리기금법에 의한 공공자금관리기금으로부터의 예수금
3. 제61조의 규정에 의한 예탁금
4. 제67조의 규정에 의한 국민주택채권 발행으로 조성된 자금
- 4의2. 복권및복권기금법 제2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배분된 복권수익금
5. 제75조의 규정에 의한 입주자저축자금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국민주택을 공급받고자 하는 자의 저축자금
6. 출자기관의 배당수익 및 대출자산의 매각자금
7. 주택건설사업 또는 대지조성사업을 위하여 외국으로부터 차입하는 자금
8. 국민주택기금의 회수금·이자수입금과 국민주택기금운용으로 생기는 수익
9. 국민주택사업의 시행에 따른 부대수익

③건설교통부장관은 국민주택기금의 운용상 필요한 때에는 국민주택기금의 부담으로 한국은행 또는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자금을 차입할 수 있다.

④제2항제6호의 대출자산의 매각방법·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73조 (국민주택사업특별회계의 설치 등) ①지방자치단체는 국민주택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국민주택사업특별회계를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국민주택사업특별회계의 자금은 다음 각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자체부담금
2. 제60조의 규정에 의한 국민주택기금으로부터의 차입금
3. 정부로부터의 보조금
4. 농업협동조합중앙회로부터의 차입금
5. 외국으로부터의 차입금
6. 국민주택사업특별회계에 속하는 재산의 매각대금
7. 국민주택사업특별회계자금의 회수금·이자수입금 그 밖의 수익

③지방자치단체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민주택사업특별회계의 운용상황을 건설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주택법시행령

제83조 (국민주택을 공급받고자 하는 자의 저축자금) 법 제60조제2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국민주택"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주택을 말한다.

1. 국가·지방자치단체·대한주택공사 또는 지방공사가 건설하는 85제곱미터 이하의 주택
2. 국가·지방자치단체·대한주택공사 및 지방공사외의 사업주체가 건설하는 60제곱미터 이하의 국민주택

제103조 (국민주택사업특별회계의 편성·운영 등) ①법 제73조제1항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에 설치하는 국민주택사업특별회계의 편성 및 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할 수 있다.

②국민주택을 건설·공급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7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민주택사업특별회계의 분기별 운용상황을 그 분기가 끝나는 달의 다음 달 20일까지 건설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의 경우에는 시·도지사를 거쳐 보고하여야 한다.